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97,283,594	11,918,508
일반회계	371,108,369	11,133,251
특별회계	26,175,225	785,257
기타특별회계	26,175,225	785,257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76,448	26,293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96,623	2,89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876,381	266,291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530,504	165,915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547,035	16,411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836,851	25,106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144,484	4,335
상수도특별회계	5,198,307	155,949
수질개선특별회계	83,777	2,513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915,218	117,457
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27,800	834
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특별회계	41,797	1,25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234,29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간주예산)